

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6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

회차	정기 11차	일자	2024. 03. 25. 18:30	장소	총학생회실(107관 208호)
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

0 성원 점검

간호대학	경영경제대학	사범대학	사회과학대학	약학대학	예술대학	의과대학
X	O	O	O	O	O	X
인문대학	자연과학대학	통일공대	동아리연합회	총학생회장	부총학생회장	계
O	X	O	X	O	O	9/13

1 단위별 보고

간호대학	-
경영경제대학	- (3/22)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등록 안내 완료 - 2024 경영경제대학 학술제 준비중 - 2024 경영경제대학 축제기획단 모집 예정
사범대학	- (3/20) 유아교육과 학생회 당선 - (3/21) 사범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선발 완료 - (3/26) 신입국원 인준 예정 - (4/1) 단학대회 진행 예정, 3/22 소집 공고 완료
사회과학대학	- (4/9) 단학대회 진행 예정 -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선발 완료 - 사회과학대학 팀플룸 운영 중 - 2024-1학기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- 1분기 에코 캠페인 진행 중 - (4/4) 1분기 간담회 학내 청소 노동자 주제로 진행 예정 - 303관 지하 2층 불법카메라 추가 탐지 완료 - 타교와 연합학술제 준비 중
약학대학	- 102관 내 팀플룸 운영 논의 중 - 5월 약학대학 봄 축제 논의 중
예술대학	- 예술대학 학잡 주문 완료 - (3/25) 예술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1차 합격자 선발 완료 - 예술대학 내 어도비 공동구매 진행 중 - (4/18) 중간고사 간식 사업 301관 로비에서 진행 예정
의과대학	-
인문대학	- (3/21) 인문대학 재선거 무산 등록 공고 - 선관위에서 비대위 체제로 변경 - 2024-1학기 인문대학 동아리 등록 완료
자연과학대학	-
통일공대	- 기계공학부, 화학공학과 선거 진행 중 - (3/28) 단학대회 예정, 소집 공고 완료

	- (3/21) 통일공대 동아리 박람회 진행 - (5/24) 통일공대 해오름제 208관-310관 일대에서 진행 예정
동아리연합회	-

2 보고 안건

중양집행위원회	<p>(학교 접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자인 투표 종료 후 최종 선정 시안 결정. 업체 측과 부자재 및 색상 선정 완료 - 금일 시착회 샘플 수령하여 3일간 진행 예정 - (3/29~4/7) 공동구매 신청, 시착회와 동시 진행 - (4/11) 최종 명단 업체 측에 전달 예정 - 5월 4주차 배부 예정 <p>(교육 관련 제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3/21) 상도에 위치한 어바웃투 스터디카페와의 대면 미팅 후 제휴 확정 - (3/22) 북카페 측과 대면 미팅 후 제휴 확정 - (3/25) 카피킬러 대면 미팅 진행 후 견적 파악 - (3/29) 학사정기협의체 11시 개최 예정 - (3/22) 봄 농활 미팅 괴산에서 진행 완료 - 노동자 간담회 상세 결과보고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 - 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 카뉴 업로드 완료. - 3월 내로 야식판매 메뉴 확정 및 주문 예정 - 생활관 간담회 8건 접수 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필요 내용 조사 및 보완하여 간담회 준비 중. - 상주사업 물품 확대 예정. C타입의 노트북 충전기, 키스킨 & 키스킨 파우치, 돛자리, 우산 추가 구비 - 얼음 정수기 10대 8월 중 설치 예정.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학우가 많은 고시반 주변의 공간,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을 위주로 설치 요구할 장소 요구 완료. - 중대중심 사이트 호스팅 연장 요청서 전달 완료하여 (~25.03.27)까지 연장 진행. - 중양운영위원회 9,10차 카드뉴스 제작 중 - 학생회비 추가납부 안내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
산하위원회	<p>(졸업준비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월 1차 학위복 대여 사업 완료, 3월 2차 신청 확정자 대상 문자 전송 완료 - 졸업학년대표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완료 - 윈투스픽 업무제휴 완료 <p>(문화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3/19) 축제기획단 1차 총회의 진행 완료 - 축제 공식 슬로건 선정 - 대학로 연극 ‘뷰티풀 라이프’ 제휴 진행 중 - (3/25) 축제기획단 2차 총회의 진행 완료 - 축제 공식 로고 선정, 팀별 업무 보고 예정 <p>(학생복지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원의 아침빵 수량 50개 추가, 변경된 수량 반영해 홍보물 및 홍보 수정 완료

	<p>(학생인권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내 장애인 화장실 전수조사 사업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. - 봄 축제 동시자막을 위한 속기사 고용 완료. 시급10만원(출장비, 부가세 포함) - 축제 배리어프리존 및 기타 제안서 작성 완료. - 저시력사용 망원경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에 요청중. - 인권센터 측과 협업 통해 축제 거리부스 인권캠페인 사업 논의 중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3/19) 기금운용심의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자격으로 참석. - (3/22) 다빈치 캠퍼스와의 논의 및 협의 후 학사정기협의체 개최 확정. 안건 사안 또한 협의 완료. - (3/25)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 업로드 - 분기별 피드백 주간 운영 예정

3 논의 안건

1. 2023-2학기 예산자치제 회계 감사 관련 논의

1) 손끝사이

- 10차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직인이 포함된 영수증을 재요청하였음.
- 손끝사이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빙 자료 참고하여 전액 지원 결정

[결론] 요트부를 제외한 4개 단체 전액 지원, 요트부는 50,000원 환급 요청 예정

2. 2024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논의

[총학생회 회계내역 관련 안내]

<p>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</p>
<p>제20조(권한과 의무)</p> <p>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</p> <p>② 전학대회 소집 요구</p> <p>③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, 집행국 등의 보고, 인준사항, 각 기구의 총학생회 예산안·결산 등이 포함된 전학대회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회 당일 배포하며, 대회 3일 이전에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다.</p> <p>④ 전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, 회의록에 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한다.</p>
<p>제21조(안건 상정)</p> <p>①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.</p> <p>②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의 연서로 개최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최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 단, 안건 발의자 혹은 그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.</p>

- 전학대회 3일 전 안건 공고와 함께 자료집 배포

- 2023.12.01.~2024.03.31까지의 회계 내역 자료집 포함

[2024-1학기 총학생회 예산안 관련 논의]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
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

제19조(업무)

- ①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
- ② 본회 예산안 의결 및 결산안 심의
- ③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
- ④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
- ⑤ 본회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
- ⑥ 중앙집행위원장·각 집행국장·각 위원장·특별기구장의 소환권
- ⑦ 중앙집행위원장·각 집행국장·각 위원장·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, 심판권
- ⑧ 학칙 개정의 건의
- ⑨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- ⑩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신설, 폐지 및 위원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

제6장 중앙운영위원회

제37조(업무 및 권한)

- ①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
- ②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
- ③ 본회 결산안 심의 조정
- ④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
- ⑤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
- ⑥ 전학대회 소집 요구와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
- ⑦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
- ⑧ 규정의 제정 및 수정
- 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, 각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, 소환권
- ⑩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의결
- ⑪ 회의록 작성 및 공개

- 중운위에서 예산안 심의조정 후 전학대회 의결 진행

- 중운위 공지방에 업로드된 예산안 토대로 사업 진행 예정이며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

- 예산안 관련 논의

사과대: 야식 판매사업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번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 전반적인 예산인가?

총: 그렇다. 1회에 100만원 내외로 집행 예정이다.

사과대: 학복위 사업 중 의혈지킴이에 180,000원 배정된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?

총: 간식비로 사용된다.

사과대: 한가위 귀향버스 4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?

총: 버스 대여비이다.

사과대: 학인위 전체 학생 대상 인권교육 사업 금액 작년과 동일한 것인가?

총: 1년 동안 4분의 강사분 모실 예정이며 작년보다는 소폭 인상하였음

사과대: 야식 판매사업의 경우 100만원을 실제 구입 비용과 판매 비용의 차익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가?

가?
총: 그렇다

[결론] 예산안 관련 세부사항 수정하여 임시회의에서 의결 예정

[총학생회 회칙 개정 관련 논의]

7조: 단과대학 학생회를 본회의 구성에서 제외하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보류

8조 2항: 중앙운영위원회의 -> 중앙운영위원회

2장 13조 2항 / 21조 3항: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시 해당 안건을 진행하지 않는다.

(단, 대리인은 안건 발의자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)

14조 3항: 총회 -> 학생총회

3장 15조: 최고 결정권 -> 최고 의결권

16조 5항 / 24조 3항: 학생회장(단) -> 학생회장단

17조 3항: 원안 유지 + 임시의장 -> 임시 의장

18조 3항: 대회 -> 전학대회

19조 10항: 간부의 소환 및 탄핵 심판권 삭제 (19조 6,7항과 내용 중복)

20조 3항: 각 기구의 총학생회 예산안, 결산안 -> 총학생회의 예산안,결산안

21조 3항 / 28조 3항 / 36조 1항 / 60조 1항: 단, ~ -> (단, ~)

22조 2항 / 29조 2항: 원안 유지

22조 3항: 대회 -> 전학대회 / 시행 세칙 -> 시행세칙

23조 / 35조 / 40조 / 54조: 위치 -> 지위

23조: 확대운영위원회 -> 확대운영위원회(이하 확운위)

+) 회칙, 세칙 확운위로 간결화

24조 3항: 회칙상단위 -> 회칙상 단위

+) 추가 논의 예정

26조 2항: 대회 -> 확운위

30조 9항: 산하위원회 -> 산하 위원회

31조: 다음 대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중운위 의장은 다음 대에 구성된 중운위를 소집할 수 있다.

다음해 -> 다음 해

36조 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단과대학 학생회장단,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구성한다. (단, 부가 있을 시 포함하며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.)

36조 3항: 구성단위 -> 구성 단위

38조: 위원장 -> 의장

40조: 집행기구 -> 집행 기구

47조: 단과대 -> 단과대학

48조: 단과대학 학생회장 -> 단과대학 학생회장단

48조 2항: 학생 -> 회원

49조: 임시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

52조 (회장) -> (회장단)

+)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임시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

제10장 각 위원회 -> 제10장 산하 위원회

제58조 1항, 2항

각 위원회 -> 산하 위원회

54조: 위치 -> 설립

제61조 2항: (단, ~)

제62조 1항: 결정하여야한다. -> 결정하여야 한다.

제79조 1항: 진행방식 -> 진행 방식

제13장: 예산자치제 띄어쓰기 수정(전체 회칙 띄어쓰기 수정)

[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련 논의]

중선관위 위원, 중앙선관위원 -> 중선관위원 으로 통일

12조 3항: 선본 -> 선거운동본부

23조 2항: 중선관위원장(혹은 부중선관위원장) -> 중선관위원장(혹은 부중선관위원장)이

31조 1항: 원안 유지

대한민국 공직 선거법 제19조 내용 서술

임의적 징계: 2/3 찬성으로 의결 조건 강화

[총학생회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정 관련 논의]

시행 세칙 -> 시행세칙

[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]

제2조 1항 11목: 중요한 자 -> 중요한 제3자

제7조 3항: 공식 절차 -> 공식절차, 비공식 절차 -> 비공식절차

제2장 제7조(사건의 처리) -> 제7조(사건의 신고)

제2장 제8조: “2차 가해, 직무 유기, 사적 폭력”을 제1항에서 “다음과 같은 행위”로 통칭하여 설명.

1) 2항, 3항, 4항에 각 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 항목 추가

2) 2항 2차 가해의 범위 확대

제2장 제9조 제1항

관계당사자들은 ~ 아니 된다. -> 관계당사자들은 다음에 기재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. 다음 각 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편적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제2장 제11조 제2항 1호

공개범위 : ~최소한의 정보를 해결의 주체들과 ... -> 최소한의 정보만을 해결의 주체들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2장 제11조 제2항 2호

해결절차의 결정 : 회칙에 규정된 ~ -> 공동체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 수반하거나 불가한 경우가 아닌 한 사건 해결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

제2장 제11조 제3항, 4항 & 4항 1호, 2호 최종 접수자 -> 최종접수인

+ 전체적으로 최종접수인 띄어쓰기 검토

제3장 제13조 2항 2호

공적 해결. 인권 침해는 ~ 책임이 있다. -> 인권 침해는 공적인 문제이다. 공동체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는 사건에 관련해 함께 반성하고 행동을 시정하여야 한다.

*인권 침해가 공적인 문제라면 공동체의 귀책 사유 유무는 관계없이 함께 행동해야함

제3장 제12조 4항 1호 가목: 원안 유지

제12조 형식 수정

3. 2024-1 중앙감사회의 가이드라인 최종 피드백

- 해당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예정

현금영수증 -> 구매영수증으로 통일 후 개인 번호로 세액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등록 금지 항목 추가

- 연극학과 요청 시 공개 추가

4. 1차 학사정기협의체 관련 논의

1. - 2024. 03. 29. 11:00 개최 확정
 - 서울캠퍼스 학생 참여자: 총학생회장단, 중앙운영위원회 1인, 중앙집행위원회 1인
 - 서울캠퍼스 측 안건
- D) 개설 희망 교양과목 공모전 개최
- II) 군e-러닝 학습환경 개선
- III) 다전공 선발 기준 및 결과 공개
- IV) 수강신청 교환 교과목제도
- V) 수강신청 대기순번제
- VI) 액트(ACT) 학생 부담 완화

4 의결 안건

1. 전학대회 안건 정리 후 의결 안건 추가 예정

제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9	9	0	0	가결

5 기타 안건

1. 2024-1학기 예산자치제
2. 5월 공간조정회의
 - 차주 회의에서 일정 공유 예정
3. 2024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명단 취합 요청
 - 폐회 후 요청 예정